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95

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이재정・민병덕・이학영

이기헌 · 김성환 · 백혜련

정태호 · 김현정 · 강경숙

이병진 · 이상식 · 오세희

김병기 • 민홍철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(이하 "감사"라 한다)는 둘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, 다른 감사대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하고 있음.

그러나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,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2).

법률 제 호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의 제목 "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)"를 "(합동 감사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감사대상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둘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합동 감사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지방자치단체에 대한	제7조의2 <u>(합동 감사)</u> <u>①</u> (현행 제
<u>감사)</u> (생 략)	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감사대상이 둘 이상의 상임
	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
	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
	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감사
	를 실시할 수 있다.